

공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 인개택총78-1호
공고일자 : 2022년 9월 06일
공고기한 : 2022년 9월 06일 ~ 2022년 10월 05일

게시판 : 각 총전소

공 고 문

2022년 9월 05일, 제2차 임시대의원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제1호 의안, 2022년 상반기 결산 승인 및 감사 보고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다.
- 제2호 의안, 제14대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승인에 관한 건
 - 조합 선거규정 제3조(위원회) 4항 의거, 제14대 선거관리위원으로 최정*(30바5183), 윤성*(30바7817), 이강*(30바3987), 강신*(32바1357), 김학*(30바8596), 유권*(30바8724), 황병*(30바3547), 김성*(32바1250), 장석*(30바5361) 이상 9명을 선출하고 예비후보 박종*(30바9267), 예비후보 노재*(30바3066), 예비후보 박춘*(30바2395), 예비후보 이태*(30바5644), 예비후보 배연*(30바4169)를 예비후보로 선출 승인 의결하다.
- 제3호 의안, 감사 선출에 관한 건
 - 정관 제14조(선출방법) 선거규정 제20조(감사선출)에 의하여 부족한 감사 후보자 1명(엄주* 30바5779)을 만장일치로 추가 선출하다.
- 제4호 의안, 플랫폼 사업 대책에 관한 건
 - 카카오가 제안한 대화 협의기구를 만들어 카카오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로 하고 이음카드앱콜을 인천시 공공앱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기로 하다.
- 제5호 의안,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의 건
 - 표결(찬성 18표, 반대 0표, 기권 6표)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다.

(별지참고)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내용

1. 개정내용 :

정관 제13조(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5항 ③,④ / 선거규정 제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4항 ③,④ 삭제

- ▶ ③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2회 이상 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고 최종 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민사소송을 제기한 자
- ▶ ④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형사상 진정,고소,고발,소송 등을 2회 이상 제기하였으나 조합 및 조합원이 무죄 또는 무혐의로 2회 이상 확정되어 최종사건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형사소송을 제기한 자

2. 개정사유 :

- 본 조항은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고소·고발의 남발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현 집행부를 상대로 50여 차례 이상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제도적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 “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간의 고소 고발은 조합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항만 선관위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원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당선되었을 때 당선이후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되는 등 위 ③,④항의 증거를 당시 당사자의 신고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확인할 수 없음으로 선거이후 당사자간 다툼으로 인한 소송제기가 자명하게 예견되며,
- 그에 따른 많은 법률비용 발생이 예상되고 9,000여 조합원 단체의 선거가 고소 고발 당사자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등 조합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발전을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